

자료보호 기간 연장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5일
신청인	상호(명 칭)	사업자등록번호		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	
	주소(사업장)	(전화번호:)		
신청사항	① 통지번호			
	자료보호 항목			
	자료 보호기간 만료 예정일	년	월	일
	② 보호요청 연장기간	년	월	일까지
	보호요청 연장 사유			

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환경부장관 · 화학물질안전원장 · 유역(지방)환경청장 · 한국환경공단 귀하

첨부서류	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7조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 검토 결과서 원본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- ①란은 자료보호 신청시 환경부장관, 화학물질안전원장, 유역(지방)환경청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통보서의 통지번호를 적습니다.
- ②란은 자료보호기간 만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청인	처리기관
	환경부, 화학물질안전원, 유역(지방)환경청, 한국환경공단

